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종합감사 -

2024. 하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일반직 및 기간제 채용업무 추진 부적정	(시정)		3
2.	신용카드 관리업무 처리 미흡	(시정)		8
3.	행사운영비 지출 부적정	(주의)		11
4.	직인대장 미작성 및 인영의 보존 소홀	(시정)		13
5.	제규정 정비 소홀	(통보)		16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일반직 및 기간제 채용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서류전형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관리 지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채용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전형은 외부관련 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8조에는 회장은 당해 채용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당해 채용의 전형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제13조에 의하면 전형 위원은 응시자와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근무)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 응시자격 등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단계에서도 적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서류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전형위원 중 응시자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제척·회피했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관에서는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한 총 12건의 일반직 및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 등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및 위촉 없이 내부직원 3인으로 하여금 서류전형심사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다.

특히, 위와 같이 서류전형위원회 구성 절차의 누락으로 전형위원으로서의 적합 및 자격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 20◇◇년 □월(공고일 기준) 실시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는 응시자 ○○○과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약 □개월간 동일부서(★★★★★) 근무경험이 있어 서류전형 심사자로서 제척·회피되어야 할 ☆☆☆☆☆ 직원 ●●●에게 서류심사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위 기관에서 추진한 일반직 및 기간제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를 초래했다.

2. 채용서류관련 개인정보 보호의무 소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및 도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및 점검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일반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용서류(주민등록 등·초본, 자격증 사본 등)에 채용과 관련된 목적이 소멸된 응시자(불합격자)의 서류는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진행된 총 13건의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가 종료되어 보유 목적이 소멸된 개인정보 포함 채용서류를 별도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타당한 조치 없이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채용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 규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관리업무 미흡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제63조에는 해당 규정 및 규약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자 및 보관책임자 등이 기재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는 등 발급대장을 현행화하여 관리했었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인트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했었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감사일 현재 기준으로 신용카드 22장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발급대장을 미작성, 담당자 교체 시에 비밀번호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서면(내부결재) 인수인계 미실시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 00,000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사용 중인 카드에 대해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고, 발생한 포인트 00,000점은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운영비 지출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등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집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규약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3. 행사운영비(201-03)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2. 공공운영비(201-02)에서는 차량용 유류비와 유지비 등은 차량·선박비에서

구입하되 공공조달 유통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 업무추진비(203목)에서는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다과 포함)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각종 회의 참석자에 대한 다과 구입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집행하고, 차량용 유통대는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23년 2월 15일부터 2024년 6월 7일까지 00건(0,000,000원)의 각종 회의 관련 다과 구입과 차량 유통대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공공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직인대장 미작성 및 인영의 보존 소홀 등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직인관리규정」에 따라 직인을 관리하고 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직인관리규정」 [별표]에 따르면 본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의 직인은 [표]와 같다.

[표] 직인규격

사 용 주체별	직 인 명 칭	규 격 (mm)	서 체	모 형
경상북도장애인 체육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장인 (본회의 대외문서발송용)	30×30	한글 전서체	정방 사각형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경리원	24×24	"	"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출납원	24×24	"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계인	길이 30, 폭 1.3 반타원형	"	"

1. 직인대장 미작성 및 공고 미시행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직인관리규정」 제4조(직인대장)에 따르면 직인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대장을 작성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공고)에는 직인을 신조·개각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하였을 시에는 직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계인을 직인대장에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북도장애인 체육회 홈페이지에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직인의 신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않았다.

2. 인영의 보존 및 공인 관리 소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직인관리규정」 제6조(인영의 보존)에 따르면 직인 관리자는 매년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시행 2015. 1. 1.)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1호, 시행 2014. 11. 29.)에 의거하여 조항에 포함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자구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매년 직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고, 인영부를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직인명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최신화 하여 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인영부 및 공인에 대한 점검한 결과 2007년 4월 30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장인,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경리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출납원을 최초 등록한 이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았으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계인은 인영부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직인관리규정」
[별표]의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경리원’의 직인명을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재무관’으로
최신화하지 않았으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경리원’의 직인을 폐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는 등 공인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직인대장 작성, 인영의 보존, 홈페이지 공고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제규정 정비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여비규정」,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을 두고 있고, 각각 임·직원의 업무 상 여행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과 예산과 재무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여비규정 정비 소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여비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여비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별표 1]에서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여비의 지급 구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2]에서 국내 여비 지급표와 [별표 4]에서 국외 여비 지급표를 두어 여비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여 두고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여비규정」 제6조에서는 [별표 1] 국내여비 기준표의 여비를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같은 규정 제8조의 [별표 2]국외여비기준표의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별표 1]과 [별표 2]의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상 여비의 지급 구분표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여비의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해당 규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규정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표] 「여비규정」 현행 규정과 부재 규정

구 분	표시 규정	부재 규정
여비규정 제6조 [별표1]	국내여비지급구분표	국내여비기준표
여비규정 제8조 [별표2]	국외여비지급구분표	국외여비기준표

2. 회계규정 법령개정사항 미반영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제2조(적용범위)에는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3조(법령의 준용)에는 이 규정 및 규약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시행 2015. 1. 1.)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81호, 시행 2014. 11. 29.)에 의거하여 조항에 포함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자구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준용되는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준용되는 법령의 개정이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회계규정」 제5조(회계관직 지정)제1항과 지출 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여전히 경리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규정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상 내용과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통보)